

2007년 6월 30일

슈와브 대사  
미합중국 무역대표  
워싱턴 디씨

슈와브 대사 귀하,

본인은 금일 서명되는 우리 양국 정부간 자유무역협정의 제20장(환경)에 관한 협상과정에서 대한민국 대표단과 미합중국 대표단간에 도달한 다음의 양해를 확인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제20.3조제1항가호에서 발생하는 사안에 대하여 협정상의 분쟁해결을 개시하기 전에, 당사국은 분쟁의 대상이 될 환경법과 그 범위에 있어 실질적으로 동등한 환경법을 자국이 유지하고 있는지 여부를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본인은 이 서한과 귀 정부가 이 양해를 공유한다는 것을 확인하는 귀하의 회답 서한이 자유무역협정의 불가분의 일부를 구성함을 제안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김 현 종